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34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을 명확히 하고,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및 면책제외 사유를 규정하여 「건설산업 기본법」이 개정(‘24.1.9)됨에 따라 그 내용을 지침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반영(안 제4조제3항)

나. 하자담보책임 면책 및 면책 제외 사유 규정(안 제8조 및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전자우편 : cpug21c@korea.kr
- 팩스 : 044-201-5546(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전화 044-201-3514 또는 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